

「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소진혁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「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, 빈곤, 건강, 이혼 등의 사회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독사 또는 고독사 의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음.
- 이에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·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,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과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, 실태조사(안 제3조~제5조)
-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

○ 부서검토: 복지정책과 의견제출

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·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저출산, 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실직, 휴폐업, 질병,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체계 확충과 지원강화가 필요한 실정임.
- 지난 4월 홀로 거주하는 구미시 시민의 응급 구조에 큰 역할을 한 ‘AI스피커 통합돌봄사업’이 올해 말 복지부 공모사업의 종료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지속,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.

- 또한, 제7조와 제9조의 내용을 통해 구미시의 다양한 고독사 예방 돌봄사업을 모아 재정비하고, 인근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